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제3항 관련)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		기준			
폐기물 운반선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척수	1척 이상	
	요건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			
	설비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 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인 것으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선저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개방되지 아니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행상황과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저개폐문)의 개폐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춘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중 적절한 것을 갖춘 것		
	구조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 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창구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 또는 조개껍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물창에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규모	주된 적재지(통상적으로 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대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m³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소규모의 선박총톤수에 1m³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 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안전 기준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호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을 것		
폐기물 운반 차량 (탱크 로리)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대수	1대 이상
	구조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에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계측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차량 표시	청색[색 번호 10B5-12(1026)]으로 도장하고 양 측면과 후면에 가로90cm, 세로40cm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해양배출폐기물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안전	운반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		

비고

1.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고, 저장시설과 폐기물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저장시설의 설치자는 "저장시설"란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정기적(최초 완공검사 후 10년, 그 후에는 5년마다)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삭제 <2016. 12. 23.>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
장비	유회수기	시간당 회수용량 합계 20m ³ 이상
	고압세척기	동작압력 150kg/cm ² 이상으로 1대 이상
	예열기	5kW 이상으로 2대 이상
	점도유이송펌프	15kW 이상으로 1대 이상
차재	오일펜스	B형 이상으로 300m 이상
	유흡착재	200kg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

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방제선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유조부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6. 방제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유창청소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kg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핀	2대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유조부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폐기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물수거선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m ² 이상		
	설비	윈치	20mm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m ³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비고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항목		기준			
퇴적오염 물질 수 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m ³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1식		
		밀도계	1식		
		탁도계	1식		
펌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비고

1.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이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을 말한다.
2. 위성항법보정장치(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실시간 위치 및 퇴적오염물질 프로그램 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도계란 실시간으로 퇴적오염물질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오염물질배출관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탁도계는 작업 중 부유퇴적오염물질의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하는 현장용 탁도 측정장비를 말한다.
5. 자동수심측정기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전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양묘선이란 앵커(닻)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는 설비를 갖추고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거나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는 선박을 말한다.
7.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